

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

제 1 조 [목적]

이 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·파기·수거명령]

-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 - 1.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(이하 “안전인증의 표시등”이라 한다)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
 - 2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(이하 “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고, 그 기간내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
 - 3.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,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변경·삭제한 경우 또는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·수거 또는 파기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 - 1. 상호·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
 - 2. 위반내용
 - 3. 이행기간
 - 4. 명령내용
 - 5.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-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직접 파기 또는 수거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·판매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 다만,

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·판매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3 조 [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교환·환불·수리 등의 명령]

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·공립검사기관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에 당해 전기용품의 위해여부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산업자원부 장관이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1. 제품명 및 제품모델
2. 상호·로트번호 및 제조일자(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자)
3. 명령이행책임자
4. 사유
5. 최초이행일자 및 완료예정일
6. 사실의 공표방법
7.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 조 [보고사항]

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
제 5 조 [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]

① 안전인증에 관하여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기술표준원 소속의 전기용품 안전분야와 관련된 부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④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6 조 [위원회의 기능]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
2.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
3. 안전인증의 표시등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제 7 조 [위원회의 회의 등]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 및 서기는 기술표준원소속 공무원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.

제 8 조 [위원의 수당]

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 [권한의 위임·위탁]

-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.
 1.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
 2.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신청의 접수
 3.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
 4.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
 5.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(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 기준을 포함한다)의 고시
 6.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
-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
 1. 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·파기·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

의 공표와 교환·환불·수리 등의 명령

2.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·검사 또는 질문
3.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
-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.

제10조 [위임·위탁업무의 보고]

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술표준원장, 시·도지사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 [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]

- ①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의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, 그 부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등의 면제
-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1조 제 1항 제 1호중 “검정”을 “안전인증”으로 한다.
-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조 제 3항 제 2호를 삭제한다.



[별표1]

보고사항(제4조 관련)

보고의무자	보고사항
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시설 및 자체검사 설비현황 2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 현황 및 제품명·모델·제조수량 3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자체검사 기록 4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장소 및 제조위탁처와 제조에 사용된 부분품의 구입처 5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처
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설비 및 공사에 사용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명·모델·제조일자 및 구입처 2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용도 및 사용처
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부분품으로 사용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명·모델·구매량 및 구입처 2. 완성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명·모델·제조수량·판매수량 및 판매처
법 제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수입·판매업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명·모델·수입수량·제조업체 및 제조국가 2. 수입·판매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명·모델·판매수량 및 판매처

[별표2]

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금액(제11조 제3항 관련)

위 반 행 위	근거법령	과태료금액
1.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8조제1호	400만원
2.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·보관한 경우	법 제18조제2호	200만원
3.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	법 제18조제3호	300만원
4.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8조제4호	300만원

* 비고 :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